

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

이 병 준**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약관의 사법적 내용통제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 III.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 IV. 표준약관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 V. 나가며
-

* 이 글은 2017. 5. 26.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 3922호로 공포되어 2016년까지 총 15차례 개정되었다. 약관규제법은 제정 당시에 상당히 선진적인 입법을 도입하여 간결하면서 쉬운 용어로 입법이 이루어져서 우수한 입법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약관규제법의 개정은 그 목적이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의 행정적 심사제도 완성 및 강화에 있었고 부분적으로 표준약관제도의 정착과 강화에도 있었다. 그에 반하여 사법적 내용의 개정은 제정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는 제3조 제1항에서 작성의무를 도입하는 것에만 있었다.¹⁾ 약관규제법의 실제법적 내용은 그대로 현실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통한 추상적 내용통제, 법원의 판례를 통한 구체적 내용통제에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

그렇지만 약관규제법의 시행 후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정의견이 제시되었다. 약관규제법에서 개정될 사항으로 문제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을 보면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약관규제법의 실제적 규정 내용 중에서 의외조항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현재 내용통제단계에 있는 규정을 소극적 편입요건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최근의

1) 2011년 약관규제법 개정 이전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작성·명시·교부·설명 의무를 부여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었고(동법 제3조 제2항),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는 약관의 명시·교부 의무가 면제되었다(동법 시행령 제2조). 그러나 2011년 법 개정(법률 제10474호)을 통해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려고 하였다. 즉, 우편업의 경우 정형화된 거래이자 신속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제대상에 새로 포함하였고, 전기통신업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 신종통신업 등장에 따라 약관에 관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업종별 거래여건의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법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게 되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의 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9.11. 3-7면).

2)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은영,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2017; 이병준,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관계 -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확정된 약관의 무효를 개인의 개별적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2 참조.

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작성의무 및 유럽연합에서 도입한 투명성 원칙과 연관 지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³⁾ 둘째,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되는 약관의 경우에 약관규제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⁴⁾ 비교법적으로 약관규제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독일 약관규제 관련 규정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약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30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표준약관의 규정 정비와 관련된 개정 수요가 있다.⁵⁾ 현재 표준약관 규정은 표준약관의 보급 및 이를 통한 고객보호 차원에서 그 효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표준약관이 자율적인 규제수단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이와 배치되는 내용은 완화 내지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넷째, 2012년도의 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약관분쟁조정제도와 관련된 개정 수요가 있다. 이는 이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 제도의 타당성과 함께 조정 대상·절차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지면의 부족 등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다.⁶⁾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으로 제한하여 약관규제법의 입법평가를 해보려고 한다. 첫째, 전체적인 약관의 사법적 내용통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현재 판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규정내용의 입법평가를 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앞에서 제시하였던 의외조항 및 작성의무 관련 규정의 위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II). 둘째, 약관규제법의 현행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적용제의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제30조 제1항의 입법평가를 하고자 한다(III). 셋째, 표준약관 규정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때 현재 제시된 개정안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려고 한다(IV).

3) 이와 관련한 논문으로 장경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일반원칙)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상사법연구」 제8집, 1990, 381면 이하; 이병준, “약관규제법의 민법편입”, 「소비자법과 민법(이은영 편)», 세창출판사, 2010, 201면.

4) 장경환, “‘상인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독일약관법규정의 고찰과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정문제’, 「경희법학」 제43권 제3호, 2008, 402면 이하 참조.

5) 이와 관련한 논문으로 신영수,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7권 1호, 2008, 70면 이하.

6) 전체 논의는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입법적 과제”, 2017. 6. 19. 세미나 자료집 참조.

Ⅱ. 약관의 사법적 내용통제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1. 약관의 사법적 내용통제 규정

약관의 사법적 내용통제는 기본적으로 3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약관의 편입통제, 해석 및 내용통제이다. 이러한 통제방식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법원의 판례 및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큰 개정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약관의 실체법적 규정 내용의 변화는 편입단계에서 작성의무를 도입한 것에만 있다. 약관의 작성의무는 2007년도의 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책무이다. 그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약관이 한자 및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내용 중 중요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⁷⁾ 그 후 2011년도 개정 때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내용이 추가되어 현재의 형태로 조문이 완성되었다.⁸⁾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 법률효과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단지 훈시 내지 선언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⁹⁾가 많다. 그런데 작성의무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명문의 규정으로 밝히고 있듯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최근에 이러한 목적을 독일 및 유럽연합에서 인정하고 있는 투명성의 원칙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본 조항의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입장이 늘어나고 있다.¹⁰⁾ 현재 명시적 규정을

7) 법률 제8632호, 2007. 8. 3. 일부개정.

8) 법률 제10474호, 2011. 3. 29. 일부개정.

9) 송덕수, 「민법강의(제9판)」, 박영사, 2016, 1271면; 이춘원, “외국어로 된 약관의 규제에 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 2009, 297면. 특히 이호영, 「소비자 보호법(제3판)」, 홍문사, 2015, 140면에서는 “법상 동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상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 또는 제재의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10) 이병준, “의외조항 내지 기습조항의 법률적 취급”, 「민사법학」 제73호, 2015, 251면. 동일하게

통하여 편입을 부정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의 편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¹¹⁾ 간접적으로 불공정성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¹²⁾

2. 약관의 사법적 내용통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평가

현재 편입통제, 해석 및 내용통제에 의한 3단계에 기한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 방식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없으므로 전체적인 통제방식의 체계에 대한 비판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단계별 쟁점을 통한 입법평가를 하려고 한다.

(1) 편입통제단계

약관은 계약법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편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약관규제법은 제3조에서 작성의무, 명시 및 교부의무 그리고 설명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고객의 동의를 편입의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우리 판례는 계약설에 입각하여 약관의 편입을 위하여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¹³⁾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¹⁴⁾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와 관련한 실무에서의 혼란은 존재하

투명성 원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견해로 성준호, “DCFR의 불공정조항 규정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36권 제3호, 2012, 22면.

11) 하지만 이러한 견해로 성준호, 「외법논집」 제36권 제3호, 22면.

12) 이병준, 「민사법학」 제73호, 251면. 이와 유사하게 투명성 원칙 위반이 있는 경우 약관은 계약에 편입되지만, 불공정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견해로 김진우,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민사판례연구」 제37권, 2015, 1094면 각주 28.

13) 판례는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 계약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14)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제10069호) 제4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⑥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정약관 공지시

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상 명시적 조문이 없다보니 동의를 얻지 않고 개정절차를 취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를 도입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¹⁵⁾

현재 약관규제법의 보호대상을 고객으로 하고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고객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편입통제를 통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소비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¹⁶⁾ 즉 편입통제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형평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으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는 협상력과 정보력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민법 제310조 제1항을 본받아서 명시 및 설명의무를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등에서 이와 같은 협상력 내지 정보력의 대등성이 사업자 사이에 항상 확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모든 경우에 이러한 면책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성의무의 위치 및 그 위반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으나, 이는 의외조항 및 투명성 원칙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뒤에서 자세히 논해보려고 한다.

(2) 해석단계

약관규제법은 약관과 개별약정을 구분하고 해석의 결과 약관과 개별약정이 충돌하는 경우에 개별약정을 우선하는 제4조와 약관의 독특한 해석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5조를 두고 있다. 이처럼 약관과 개별약정을 구분하는 한편 개별약정에 대하여 계약의 일반적 해석원리가 적용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회원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 시행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5) 동의를 편입요건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 2004, 272면.

16) 김대규,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 2004, 262면.

약관에 대하여만 독특한 해석원칙인 객관적 해석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획일적 해석 원칙과 고객보호를 위한 불명확조항의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을 두는 규정은 입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대부분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 약관의 획일적 해석이 고객의 구체적 사정과 주관적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¹⁷⁾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약관규제법의 특수한 원리를 무시하는 견해로 타당하지 않다. 약관규제법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개별약정과 약관을 분리하여 해석할 것을 내정하고 있고 고객의 구체적 사정과 주관적 의사를 모두 개별약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도 보험약관 관련 판례에서 보험모집인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사안에서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개별약정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⁸⁾

다만 판례가 아직도 해석단계에서 수정해석을 통하여 ‘숨은 내용통제’를 하고 있는 것¹⁹⁾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²⁰⁾ 이는 법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약관규제법의 체계에 따른 열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판례 입장의 변경이 있으면 충분하고 약관규제법의 개정사유는 아닌 것이다.

(3) 내용통제단계

약관의 내용통제는 제6조에 의한 일반조항과 제7조 내지 제14조의 구체적 내용통제조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조항과 구체적 내용통제조항의 기준은 일반과 특별의 관계에 있지만,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조항과 구체적 내용통제조항을 함께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용통제에 관한 규정은

17) 김진우,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 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유럽법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 -”,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1, 185면 이하.

1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1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20) 판례의 수정해석론에 관한 학설은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관련 문헌으로 김동훈, “약관의 면책조항과 수정해석”, 『판례월보』 제342호, 1999, 22-23면; 양창수,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한 내용통제”, 『민법연구』 제4권, 박영사, 2007, 345-347면; 최봉경, “효력유지적 축소에 관한 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1권, 사법발전재단, 2012, 183면 이하 참조.

입법상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약관규제법은 내용통제 대상을 한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계약법 내에서의 내재적 한계 내지 우리 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대원칙에 의하여 내용통제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법규정과 다르게 규정하거나 보충하는 규정만을 내용통제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 307조 제3항).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독일에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관규제법을 입법할 당시 독일의 이러한 규정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도입여부도 검토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내용통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았다고 한다.²¹⁾ 그러나 현재 우리 다수설은 독일의 논의를 받아들여서 (1) 급부와 반대급부에 관한 합의내용과 (2) 선언적 규정은 내용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²⁾ 현재 실무에서 선언적 규정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으나, 반대급부를 정한 약관규정과 관련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잘못 주장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판단한 사례가 있어²³⁾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이러한 적용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 21)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50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약관규제의 입법」, 1986, 193면.
- 22) 이은영, “약관법과 민법의 관계 - 계약내용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2010, 194-195면; 최병규, “약관내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경제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3, 194면; 김진우,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2012, 158면.
- 23) 최근에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모아서 전기료누진제에 따른 전기료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해당 전기료를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하는 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패소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 해당 판결에서 원고들은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전기료누진제는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 한국전력은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실질적 불공정성 판단에 있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불공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본 사건에 문제되고 있는 전기료누진제는 반대급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는 약관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불공정성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접근 방법을 잘못 잡은 것이다(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병준, “전기료누진제와 일방적 급부결정권 행사의 정당성”, 「월간 소비자」 2016/10 참조).

3. 의외조항의 법률적 취급과 투명성 원칙의 도입여부

(1) 의외조항의 법률적 취급에 관한 문제

현재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조항)에서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불공정성을 추정하는 하나의 사유로서 보는 입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에 대하여 1) 의외조항을 독일민법 처럼 편입통제의 문제로 취급할 것을 제안하는 입장,²⁴⁾ 2) 현행 규정대로 내용통제의 문제로 보는 입장,²⁵⁾ 3) 편입통제문제라도 내용통제문제로도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입장²⁶⁾으로 학설상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3조 이하에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조항은 이를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개정안이 신설되어야 함이 주장되기도 하였다.²⁷⁾

한편 약관의 편입여부는 계약 중에서 주된 급부의무에 관한 규정이든 부수적 의무에 관한 규정이든 상관없이 문제되지만, 불공정성 여부는 부수적 의무에 관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고,²⁸⁾ 이와 관련하여 의외성을 소극적 편입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독일민법상으로는 부수적 의무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주된 급부의무에 관한 규정에서도 고려할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외성 판단은 부수적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주된 급부의무에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1) 독일민법과 같이 소극적 편입요건으로 규정을 변경하거나, 2) 불공정판단척도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사유를 부수적 의무를 넘어 주된 급부의무까지 심사할 수 있는 항목을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두자는 개정안이 주장되었다.²⁹⁾

24) 장경환, 「상사법연구」 제8집, 1990, 381면 이하; 이기수·유진희, 「경제법(제10판)」, 법문사, 2013, 496면; 이병준, 「소비자법과 민법(이은영 편)」, 세창출판사, 2010, 201면.

25)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89-190면; 최근에 견해를 수정하여 의외조항의 문제를 내용통제의 문제로 취급하는 문헌으로 김진우, 「민사판례연구」 제37권, 2015, 1147면.

26) 김진우,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 - 유럽 및 독일계약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2012, 164면;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민사법학」 제62호, 2013, 320면.

27) 장경환, 「상사법연구」 제8집, 1990, 383-384면.

28) 이는 물론 학설상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혼란이 존재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2) 투명성원칙이 반영된 규정과 의외조항에 관한 규정의 중첩 문제

우리 약관규제법은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이미 살펴보았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 투명성원칙 위반 효과에 관한 명문규정의 부재에 따라 사실상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를 불공정성 판단을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기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불공정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의외조항이 추정규정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용통제 단계에서 그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투명성 원칙과 의외조항에 적절한 역할 분배를 하여 이를 입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1) 독일민법처럼 의외성 조항을 편입통제단계에 두고 투명성 원칙 조항을 내용통제단계에 두는 방안, 2) 투명성 원칙조항을 현행법 형태로 둔다면 의외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³⁰⁾

Ⅲ.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는 크게 보면 편입단계만을 면제해 주는 규정, 내용통제단계에서 구체적 내용통제조항을 배제하는 규정 및 약관규제법 전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즉 편입단계에서는 명시 의무를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등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고 있다(제3조 제3항 단서). 또한 내용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제15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

29) 이병준, 「민사법학」 제73호, 2015, 244면.

30) 이병준, 「민사법학」 제73호, 2015, 255면.

통제규정이 아닌, 일반적 내용통제규정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약관규제법 전체를 배제하는 적용제의 규정에 관하여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약관규제법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변천과정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30조는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다. 개정은 단 한 차례 이루어져 1992년도 개정 때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2항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 밖에는 규정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 약관규제법 제30조 제1항의 적용제외 규정의 입법평가

약관규제법 제30조 제1항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분야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이미 공정성 보장을 위한 특수한 규정들이 많이 존재하여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의 성질상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³¹⁾ 본 규정은 이러한 취지에서 3개의 분야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상법 제3편인 회사법 분야, 근로기준법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이다.

(1) 상법 제3편 회사법 분야의 적용제외

법문상으로 보면 상법 제3편 회사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하면 본 법이

31) 손지열, 「민법주해[XII]」, 박영사, 429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통하여 회사법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을 통한 보호를 배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우리 학설은 ‘회사법 분야의 약관’으로 이해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적용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²⁾ 즉 회사의 설립, 주식의 모집, 회사의 운영, 신주청약, 사채모집 등에 관한 계약에서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단체법적 영역에 해당하는 계약이고 회사의 자율성이 강조되므로 약관규제법을 통한 내용통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즉 약관규제법의 규정은 주로 채권법적 교환계약을 예상해서 마련된 것이므로 대체로 이익단체계약 또는 합동행위에는 약관규제법을 통한 보호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단체의 정관과 같이 당사자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약관의 성질과 이러한 단체의 정관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약관규제법에 기한 내용통제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체 내지 법인에서 사용하는 정관에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부터 문헌에서 회사법 영역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양도 거래약관처럼 개인적 거래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주장되었다.³³⁾

독일에서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³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협동조합, 사단,³⁵⁾ 파트너쉽회사,³⁶⁾ 선박조합, 또는 유럽경제 이익단체³⁷⁾의 설립에 관계되는 계약, 정관은 회사법 영역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약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서로 인적 관계가 있거나 거래상 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된 계약조건에 근거하고 있고, 여러

32) 장경환,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경회법학」 제41권 제2호, 260면 이하.

33) 손지열, 「민법주해[XII]」, 박영사, 430면.

34) Vgl. BGH ZIP 2009, 1008 Rn. 6.

35) BGHZ 105, 306 = NJW 1989, 1724.

36) H. Schmidt, Stille Gesellschaft und AGB-Gesetz, ZHR 159(1995), 734.

37) Bamberger/Roth/Becker, § 310 Rn. 28; Erman/Roloff, § 310 Rn. 27.

법률의 강행규정을 통해 부당한 규정을 담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원의 내용통제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회사나 사단 설립 후 참가를 위해 대중에 공개를 한 경우에는 설립자로부터 추후의 참가자들에게 부당하게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약관규제법상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계약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즉 단체법의 경우에는 단체법적 원리에 의하여 정관 등이 만들어지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정관이 작성되므로 모든 구성원들이 해당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내용이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 단체법이 적용되는 정관 등이 있더라도 해당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구성원들의 의결권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거나 배제되어 있는 때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규정과 관련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본 규정에서 단순히 '상법 제3편에 해당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하며 약관규제법에 의한 보호필요성이 없는 계약유형으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2) 근로기준법 분야의 적용제외

법문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분야의 계약에 관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우리 학설은 이를 노동법 분야로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노동법 분야에서는 노동자가 이미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두터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으므로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특별히 노동자를 더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³⁹⁾

독일에서도 노동법 영역에서의 계약이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독일 구약관규제법 제23조 제1항). 노동법 영역에서 근로자는 약한 계약 당사자로서 부당한 계약조건으로부터 각종 강행규정 및 노동3권에 기한 집단적

38) 이에 대하여 MüKo/Basedow, BGB § 310 Rn. 86-92.

39)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745면; 장경환,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261면.

방법에 의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통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⁴⁰⁾ 그런데 독일법에서는 입법의 변화가 이 분야와 관련하여 있었다.⁴¹⁾ 즉 적용제외가 되는 분야를 단체협약, 사업장협정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에 의한 집단적 방식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지고, 계약의 편입 없이도 당연히 근로계약에 적용되며 강행적 법률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강행규정 및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자보호가 있더라도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가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고 법원마다 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약관규제법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에 적용하되 노동법상 인정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약관규제법에서 형식적으로 모든 근로계약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대법원에서 약관규제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부정한 판례사안이 있다. 즉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연체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채권관리사 사이에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관리사들이 신용카드 연체회원관리, 연체대금회수 및 이에 부수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채권관리사가 퇴사한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위임계약서 제11조(관할법원)는 ‘갑과 을간의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후 본 관할법원 조항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

40) BT-Drs. 7/3919, S. 41.

41) 이에 관하여 박종희, “보통거래약관법의 민법과의 통합”,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김형배 외 5인 공저)」, 2002, 159면 이하; 박지순, “일반 사법상 근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Ⅰ) - 독일민법전(BGB)의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4, 63면 이하; 한인상, “독일민법상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와 근로계약의 형성”, 「광운비교법학」 제5호, 2004, 381면 이하 참조.

는 결정이 내려지자, 약관규제법 제14조의 적용을 주장하여 해당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자신들이 회사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는 본 사건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본 사건의 계약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을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⁴²⁾ 하지만 본 사안에서 드러나듯이 관할법원 조항처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조항이 근로계약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이 다수의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약관에 있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실무에서도 근로계약에 대하여서도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가 필요한 사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의 적용제외

이 분야에 대한 적용제외는 약관규제법 제정 때부터 있었으나, 그 적용제외 이유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해당 사업분야가 위임되어 있으나, 한 번도 제외되는 사업분야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소송에서 해당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명시적인 배제사업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않았다.⁴³⁾

42) 대법원 2010. 1. 19. 자 2009마1640 결정.

43) 대법원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시행령상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동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또한 하급심 판결로 토의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임을 이유로 시험 관련 약관에 대한 동법의 적용의 배제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대체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토의시험 계약이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서울

이처럼 특별한 제외 근거를 찾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영역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송상 이를 주장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적용제외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Ⅳ. 표준약관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1. 표준약관 관련 규정의 도입과 변천과정

표준약관의 규정이 신설된 1992년도 개정⁴⁴⁾ 당시에만 해도 표준약관규정은 단순하면서도 표준약관과 관련한 규정 내용으로 최소한도의 규정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내용을 심사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구약관규제법 제19조의2). 표준약관이 거래조건의 담합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사업자 내지 사업자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자가 스스로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불공정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의무규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규정내용으로서 사적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적합한 입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 내용은 2004년도 개정⁴⁵⁾을 통하여 대폭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강화된다. 해당 개정 내용을 통하여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표준약관의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표준약관을 공시하는 한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그

지판 2003. 5. 2. 선고 2002가합 62628 판결).

44) 법률 제4515호, 1992. 12. 8. 일부개정.

45) 법률 제7108호, 2004. 1. 20. 일부개정.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사용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도록 하였다.⁴⁶⁾ 그리고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면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표준약관규정의 틀이 완성되었다. 그 후 표준약관 규정은 부분적인 내용의 변화와 문구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하였지만,⁴⁷⁾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재까지 본 규정 틀이 유지되고 있다.

2. 현행 표준약관규정의 입법평가

이러한 규정 내용의 변화는 크게 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약관의 제정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확대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측면에서 보면 자율규제 수단인 표준약관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46) 고시 제정근거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었으나, 한동안 제정이 안 되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제정하기에 이른다(이에 대하여는 이병준/김도년,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630호, 2009, 155면 참조).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는 2009. 10. 15. 제정되었는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3호), 이후 2012. 8. 20. 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37호), 2015. 10. 23. 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6. 10. 31. 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4호)이 이루어졌다. 2016년 이전의 개정들은 고시 제5조에서 제김토기함을 두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새로 일부개정을 한 것이지만 내용상 변경은 없었고, 2016년 개정 시에는 제1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마련한 표준약관’이라는 용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기존의 표준약관 표지에 공정거래위원회 상징 문양을 사용하던 것을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바꾸었다.

47) 2006년 개정의 경우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기본법’과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문구의 변화만 있었다(법률 제7988호). 2010년 개정 때에는 단순한 문구수정만 있었으며(법률 제10169호), 2012년 개정의 경우에는 조문번호가 기존의 제19조의2가 제19조의3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법률 제11325호). 2016년 개정 시에는 제1항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를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로 문구변경을 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도 ‘약관을 마련할 것’을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으로 바꾸었다.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만 두었으나,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는 제3호를 추가하여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사유의 추가 및 문구변경을 하였다. 제4항과 제5항에서도 ‘마련’을 ‘제정 또는 개정’으로 문구변경을 하였다(법률 제14141호).

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⁴⁸⁾ 하지만 현재 민법상 전형계약관련 규정이 매우 적어서 불공정성 통제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상당히 적고, 많은 사업자 내지 사업자단체가 독자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는 현실에 있어서는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⁴⁹⁾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 내지 표준계약서는 상당히 많은 업종 내지 거래분야에 존재한다.⁵⁰⁾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은 그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므로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참여한다는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얻을지 여부는 표준약관이 자율규제수단인 이상 약관을 사용하

48) 이러한 비판으로 신영수, 「경제법연구」 제7권 1호, 2008, 70-72면.

49) 이에 다른 부처에서도 각종 법률에서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제정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3821호) 제2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11호) 제25조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들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0) 표준약관의 경우 표준약관 제10001호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시작으로 표준약관 제10077호인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까지 현재까지 총 74개의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는 1) 표준하도급계약서, 2) 표준가맹계약서, 3) 표준유통거래계약서, 4)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존재한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다시 디자인업종(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 디자인 분야, 디지털 디자인), 엔지니어링활동업종, 자동차업종, 조선제조임가공업종, 조선업종, 광고업종(전시행사이벤트계약서), 해외건설업, 가구제조업종, 건설자재업종, 정보통신공사업종, 해양플랜트업종, 경비업종, 전자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전기공사업종, 전기업종, 광고업종(방송영상광고제작분야), 화물운송업종, 조경식재업종, 상용SW공급및구축업종, 상용SW유지보수업종, 정보시스템유지보수업종, 건축물유지관리업종, 건축설계업종, 방송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화물취급업종, 건설업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 의료기기업종, 기계(기타 기계장비)업종, 섬유업종, 소방시설공사업종, 음식료업종, 의약품등 제조업종, 정밀광학기기업종, 제1차금속업종, 출판인쇄업종, 화학업종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표준가맹계약서의 경우 프렌차이즈(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편의점업종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고, 3) 표준유통거래계약서는 매장 임대차, 직매입(백화점, 대형마트), 특약매입(대형마트), TV홈쇼핑, 매장임대차(백화점), 온라인쇼핑몰(직매입거래, 위수탁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두고 있다. 4)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경우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다.

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표준약관에 일정한 지도형상적 기능 및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

(1)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시의무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즉 공정위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34조 제2항 제2호). 일단 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표시의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비판이 있다. 즉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요내용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⁵¹⁾ 그런데 사업자의 입장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 내용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본 규정의 취지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약관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처럼 타당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본 규정이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표준약관이 자율규제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내용의 약관도 사업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규정처럼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가진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면 이러한 표시로 인해 마치 사업자가 불공정한 사업자라는 관념을 소비자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현재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작성의무의 내용 중 하나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51) 신영수, 「경제법연구」 제7권 1호, 2008, 72면.

표시방법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본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되고 현재 이 규정을 기초로 한 과태료 처분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2) 또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고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하며 이와 같은 사실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34조 제1항 제1호). 통상 표준약관표지와 같은 신뢰마크를 제정하면 그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표준약관 규정과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더 나아가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사법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규정의 도입 당시에 국회 논의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이러한 규정의 내용이 “사업자가 표준약관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⁵²⁾ 이러한 규정 내용에 대하여 학설은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약관규정은 법률의 임의규정처럼 양당사자의 이익균형점을 대표하는 규정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권장사항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더 고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하여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규정이라고 당연히 해당 규정내용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내용을 삭제하거나,⁵³⁾ 최소한 해당 규정내용이 항상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업자만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⁵⁴⁾ 필자는 이 두 견해 중 삭제하지는 주장에 찬성한다.

5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03, 8면.

53) 장경환, 「경회법학」 제41권 제2호, 2006, 257면.

54) 신영수, 「경제법연구」 제7권 1호, 2008, 74-75면.

3. 신고의무의 신설 개정안

(1) 개정안의 내용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약관규제법의 개정안 중에서 표준약관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1개(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개정안⁵⁵⁾)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안 제19조의3 제7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 이와 같은 경우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신고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불공정한 약관이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입법의견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 ⑥ (생략)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u>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
⑦ ~ ⑨ (생략)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5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38, 2016. 9. 5.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 -----
<신 설>	1. 제19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신고의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준약관의 사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잘못된 기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고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많이 담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표준약관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현행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변화된 거래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표준약관을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고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표준약관은 단지 약관을 제정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뿐인 것이다.

또한 검토보고서⁵⁶⁾에도 드러나듯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표준약관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행법상의 표시의무를 넘어서 신고까지 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약관을 자주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들이 개정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때문이다. 또한 신고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자율적 규제수단인 표준약관의 사용을 강제한다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주저할 것이며, 표준약관 심사청구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

5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 6면.

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는 모두 국회검토보고서에 지적한 우려이고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4. 개정의견

표준약관은 대표적인 사업자의 자율규제 수단에 해당한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상 표준약관의 심사권한 및 예외적인 경우에 제정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표준약관의 규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도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 내용이 실제적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표준약관과 관련하여서는 인센티브적인 효력만 남기고 나머지 규정은 대폭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의3 제6항과 무효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제9항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제2항의 내용은 사실상 제3항에 담겨져 있어 중복의 의미가 있으므로 제2항의 내용을 제3항에 포섭하는 내용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V. 나가며

약관규제법이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현재 본 법은 약관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는 탁월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그 기본구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약간의 수정 내지 세밀화가 요구된다.

1. 약관의 편입통제, 해석 및 내용통제의 기본구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편입단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동의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 간 거래에서 편입단계에 관한 규정내용을 완화해야 할지에 관하여 개정 수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작

성의무, 의외조항 및 투명성 원칙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조항의 정리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내용통제단계에서 그 명확성을 위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에 관한 내용을 내용통제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제30조는 그 명확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법상의 규정은 정관 등 고객보호의 필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까지 보호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서도 단체협약 등은 제외하되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 고객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영리사업 분야에 대한 예외는 적용될 거래영역이 없는 이상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 표준약관은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표준약관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도로 규정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XII]」, 박영사, 1999.
-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 2004.
- 김동훈, “약관의 면책조항과 수정해석”, 「관례월보」 제342호, 1999.
- 김진우,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민사판례연구」 제37권, 2015.
- 김진우,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 - 유럽 및 독일 계약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2012.
- 김진우,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 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유럽법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 -”,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1.
- 박종희, “보통거래약관법의 민법과의 통합”,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김형배 외 5인 공저)」, 2002.
- 박지순, “일반 사법상 근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Ⅰ) - 독일민법전(BGB)의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4.
- 성준호, “DCFR의 불공 정조항 규정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36권 제3호, 2012.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약관규제의 입법」, 1986.
- 송덕수, 「민법강의(제9판)」, 박영사, 2016.
- 신영수,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7권 1호, 2008.
- 양창수,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한 내용통제”, 「민법연구」 제4권, 박영사, 2007.
-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민사법학」 제62호, 2013.
- 이기수·유진희, 「경제법(제10판)」, 법문사, 2013.

- 이병준/김도년,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630호, 2009.
- 이병준,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관계 -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확정된 약관의 무효를 개인의 개별적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2.
- 이병준, “의외조항 내지 기습조항의 법률적 취급”, 「민사법학」 제73호, 2015.
- 이병준, “약관규제법의 민법편입”, 「소비자법과 민법(이은영 편)」, 세창출판사, 2010.
- 이병준, “전기료누진제와 일방적 급부결정권 행사의 정당성”, 「월간 소비자」 2016/10.
-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 이은영, “약관법과 민법의 관계 - 계약내용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2010.
- 이은영,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2017.
- 이춘원, “외국어로 된 약관의 규제에 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 2009.
- 이호영, 「소비자 보호법(제3판)」, 홍문사, 2015.
- 장경환,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2006.
- 장경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일반원칙)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상사법연구」 제8집, 1990.
- 장경환, “‘상인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독일약관법규정의 고찰과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정문제”, 「경희법학」 제43권 제3호, 2008.
- 최병규, “약관내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경제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3.
- 최봉경, “효력유지적 축소에 관한 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1권, 사법발전재단, 2012.

한인상, “독일민법상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와 근로계약의 형성”, 『광운비교법학』 제5호, 2004.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입법적 과제”, 2017. 6. 19. 세미나 자료집.

Bamberger/Roth, BeckOK BGB, 42. Edition., 2016.

Erman, BGB, 15. neu bearbeitete Auflage 2017.

H. Schmidt, Stille Gesellschaft und AGB-Gesetz, ZHR 159(1995), 734.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 Auflage 2016.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2호로 공포된 후 2016년까지 15차례 개정된 약관규제법의 입법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체적인 사법적 내용통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판례상 쟁점을 살펴본다. 규정내용을 평가함은 물론 의외조항 및 작성의무 관련 규정의 위치에 관하여도 논하였다. 그리고 약관규제법의 현행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제30조 제1항의 입법평가를 하였으며, 표준약관 규정 내용을 현재 제시된 개정안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약관규제법은 약관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한 탁월한 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통제의 기본구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수정 내지 세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첫째, 편입단계에서 판례에서 인정되는 동의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사업자 거래에서 편입단계에 관한 규정내용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한 개정수요가 있어서 입법적 검토를 요한다. 더 나아가 작성의무, 의외조항 및 투명성 원칙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조항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내용통제단계에서의 명확성을 위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에 관한 내용을 내용통제에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제30조는 명확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상법 제3편 규정은 고객보호가 필요 없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근로기준법의 경우 보호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나 단체협약 등으로 제한하여 약관규제법상 고객보호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비영리사업분야의 경우 적용될 거래영역이 없는 이상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표준약관은 사적자치를 보장하고 표준약관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도로 규정 내용을 축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주제어

작성의무, 투명성 원칙, 적용제외, 회사법, 노동법, 표준약관

Abstract

Evaluation des Koreanischen AGB-Gesetzes

Lee, Byung-Jun*

Das 30 Jahre alte koreanische AGB-Gesetz wird als ein erfolgreiches Gesetz, das für die Lauterkeit der ABG-Geschäfte eingreift bewertet. Die Grundzüge des Gesetzes werden daher auch nicht besprochen. Jedoch gibt es im einzelnen Reformbedarf. Dieser Aufsatz behandelt einige Punkte in dieser Hinsicht.

1. Das AGB-Recht macht in drei Schritten die AGB-Kontrolle. In dieser Hinsicht wird teilweise behauptet, dass nach der Vertragstheorie für die Einbeziehung die Zustimmung des Kunden genötigt wird. Ferner wird gefordert, dass die Einbeziehungskontrolle für B2B Geschäfte ausgenommen werden sollte. Im Bereich der Inhaltkontrolle wird gefordert, dass die systematische Stellung der Regelungen über die Erstellungspflicht, die überraschenden Klausel und der Transparenzprinzip umfassend neu überdacht und zusammen geregelt werden müsse.
2. Im Art. 30 des ABG-Gesetzes werden drei Bereiche geregelt, die gänzlich vom Anwendungsbereich des Gesetzes ausgenommen werden. Die Regelung nimmt Verträge im Bereich des Gesellschaftsrechts und Arbeitsrechts völlig aus. Jedoch sollte die Regelung enger geregelt werden, da es im Gesellschaftsrecht und Arbeitsrecht Bereiche gibt, die den Schutz durch das AGB-Gesetz bedürfen.
3. Die Regelungen über die Musterklausel ist im Wandel zu weit geregelt worden. Daher müssen Regelungen über die negativen Folgen der nicht-Einhaltung der Muster-AGB gestrichen werden, da diese Regelungen zu weit die Vertragsfreiheit der Unternehmer beschränken.

* Hufs Law School, Seoul

Key Words

Erstellungspflicht, Transparenzprinzip, Ausnahmeregelung,
Gesellschaftsrecht, Arbeitsrecht, Muster-AGB